

임원 호선규정

2007년 9월 12일 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광주상공회의소(이하 “본 회의소”라 한다) 정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소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상공회의소법, 상공회의소법시행령 및 본 회의소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의원총회일) ①의원 및 특별의원선거(보궐선거 제외)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의원총회는 정관제36조제1항에 의한 의원 및 특별의원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
②회장이 임기중 궐위되었을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후임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③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의원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선출순서) 의원총회는 회장을 먼저 선출한 후 부회장·상임의원 및 감사를 선출한다.

제2장 회장의 선출

제5조(임시의장) ①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는 참석의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. 궐위중인 회장선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의장이 되는 자가 회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차순위자가 임시의장이 된다.

제6조(회장후보자) ①의원은 스스로 입후보하거나, 의원 또는 특별의원이 어느 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의원을 회장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된 자는 회장후보자가 된다.

②전항의 스스로 입후보하는 자와 추천한 자는 후보자등록공고일로부터 회장선출 의원총회 개최 4일전 오후 6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을 필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장의 선출) ①회장후보자가 1인인 경우 당해 회장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는 때에는 의장이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이의가 없는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회장후보자를 회장당선자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이의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장후보자에 대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여, 출석한 의원 및 특별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회장당선자가 된다. 다만, 의원 및 특별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.

③회장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회장당선자가 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일한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다수득표자에 대하여 무기명비밀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회장당선자가 된다.

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동일한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회장당선자로 한다.

제8조(회장후보자의 연설 등) ①회장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회장후보자의 연설을 허용하여야 한다.

②회장후보자 이외의 자는 회장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발언을 할 수 없다.

제9조(투표의 관리 등)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의장이 출석한 의원 및 특별의원 중에서 5인의 투·개표관리위원(이하“관리위원”이라 한다)을 지명하고, 그 관리위원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를 관리하도록 한다.

②의장은 본 회의소 사무국 임·직원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투표소 및 개표소)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의장은 투표소 및 개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회의장 내에 투표소 및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투표소에는 기표소, 투표함, 관리위원의 좌석,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.

③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한다.

④투표함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.

⑤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,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.

⑥개표소에는 투표함의 개함(開函), 투표지의 점검 및 집계,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과 관리위원의 좌석을 설비하여야 한다.

제11조(투표) ①의원 및 특별의원은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관리위원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

②기표는 기표소에 비치된 “○”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③투표용지가 교부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.

④투표를 개시할 때에 투표소(회의장을 포함한다)에 있지 아니한 의원 및 특별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.

⑤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관리위원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개표) 의장은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의 종결을 선포하고 개표소에서 개표를 실시한다.

제13조(무효투표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
1.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2.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
3. 2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
4.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5. ○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
6. ○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기표란외에 ○표를 추가한 것
7.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

②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효력이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한다.

제14조(투표결과의 공표) 개표가 끝난 경우 의장은 투표결과 및 회장 당선자를 선포한다.

제15조(투표용지의 보관) 의장은 투표용지를 사무국에 인계하여 회장 당선자의 임기 중 이를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장 부회장 · 상임의원의 선출

제16조(의장) 부회장 · 상임의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회장당선자가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당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문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7조(전형위원회) ①부회장 및 상임의원후보자는 전형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
②전형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당선자를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당선자를 제외한 위원은 회장당선자가 출석한 의원 및 특별의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③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당선자가 되며,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전형위원회의 의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⑤의장은 전형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독립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8조(정회) 의장은 전형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정회를 하여야 한다.

제19조(후보자의 발표)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전형위원회가 의결한 후보자를 의원총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선출) ①전형위원회가 의결한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는 때에는 의장이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이의가 없는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부회장, 상임의원의 순으로 후보자를 무기명비밀투표에 부치며, 출석한 의원 및 특별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는 당선자가 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그 수만큼 후보자를 선정한 후 무기명비밀투표에 부쳐야 한다.

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.

제4장 감사선출

제21조(감사선출) ①감사후보자는 의원총회 석상에서 의원 스스로 입 후보하거나 의원및특별의원의 추천에 의하여 확정한다.

②감사를 선출하는 때에는 선출된 회장당선자가 의장이 된다.

③1항의 감사후보자가 2인일 경우 감사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는 때에는 의장이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이의가 없는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감사후보자 2인을 감사당선자로 한다.

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이 이의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의원 및 특별의원의 이의가 있거나 감사후보자가 2인을 초과하

는 경우에는 회장선출방식에 준하여 감사당선자를 선출한다.

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이의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의원 및 특별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투표용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, 감사후보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투표용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.

제22조(준용) 제9조,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·제6항,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부회장·상임의원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7조의 규정”은 “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”으로, “회장당선자”는 “부회장·상임의원 및 감사 당선자”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(제6조제1항 관련)

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
(스스로 입후보하는 의원이 등록할 경우)

회장 후보자

성	명	홍 길 동
주 변	민 등 록 호	○○○○○○○-○○○○○○○○○
소 직	속 및 위	

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○○대 회장후보
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: 홍 길 동 (인)

광주상공회의소 귀중

주) 서식의 규격은 A4용지의 규격으로 할 수 있다.

(제6조제2항 관련)

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 (회장후보자를 추천한 자가 등록할 경우)

회장 후보자			
성명	홍길동		
주민등록번호	○○○○○○○-○○○○○○○○		
소속직위			
추천동의	후보자 : 홍길동(인)		

위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○○대 회장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.

 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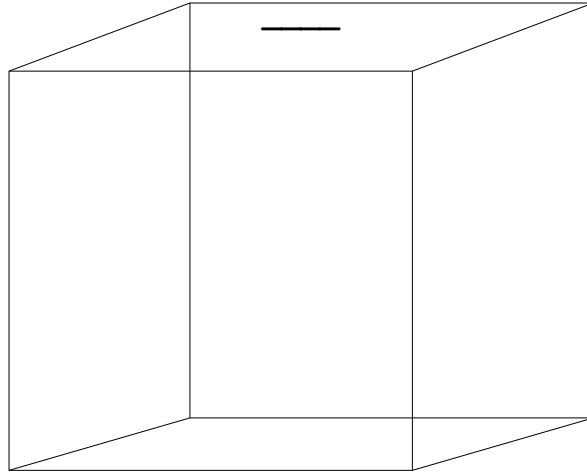
신청인(추천인) 성명 : (인)

광주상공회의소 귀중

주) 서식의 규격은 A4용지의 규격으로 할 수 있다.

[별지 제2호 서식] (제10조제4항 관련)

투 표 함



- 주) 1. 규격은 가로 40cm, 세로 45cm, 높이 30cm 내외로 한다.
2. 상단에 투입구와 뚜껑을 설비한다.

[별지 제3호 서식] (제10조제5항 관련)

회장선출 투표용지

회장 후보자

성 명	홍 길 동
소 속	○○주식회사
직 위	대표이사 회장

기 표 란

찬 성	반 대

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인

주) 서식의 규격은 A4용지의 규격으로 할 수 있다.

[별지 제4호 서식] (제10조제5항 관련)

회장선출 투표용지

회장 후보자				
〈 성명가나다순 〉				
연번	성명	소속	직위	기표란
1	홍길동	○○주식회사	대표이사 회 장	

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인

주) 서식의 규격은 A4용지의 규격으로 할 수 있다.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20조제4항 관련)

부회장 및 상임의원 선출투표

부회장 후보자					
〈성명 가나다순〉					
연번	성명	소속	직위	기표란	
				찬성	반대
1	홍길동	〇〇주식회사	대표이사회장		
2					
3					

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인

주) 서식의 규격은 A4용지의 규격으로 할 수 있다.

상임의원 후보자

〈성명 가나다순〉

연번	성명	소속	직위	기표란	
				찬성	반대
1	홍길동	〇〇주식회사	대표이사회장		
2					
3					

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인

주) 서식의 규격은 A4용지의 규격으로 할 수 있다

[별지 제6호 서식] (제21조제5항 관련)

감사선출 투표용지
(감사후보자가 2인일 때)

감사 후보자					
〈성명 가나다순〉					
연번	성명	소속	직위	기표란	
				찬성	반대
1	홍길동	○○주식회사	대표이사회장		
2					

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인

주) 서식의 규격은 A4용지의 규격으로 할 수 있다.

[별지 제7호 서식] (제21조제5항 관련)

감사선출 투표용지
(감사후보자가 2인을 초과할 때)

감사 후보자				
〈성명 가나다순〉				
연번	성명	소속	직위	기표란
1	홍길동	○○주식회사	대표이사회장	

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인

주) 서식의 규격은 A4용지의 규격으로 할 수 있다.